

가맹·탈퇴 규정

GNSAD

가맹·탈퇴 규정

제정 2007. 08. 16

개정 2009. 02. 27

개정 2013. 02. 22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2장 7조(가맹 및 탈퇴)에 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22>

1. “가맹”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가맹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 또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준가맹 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4. “인정단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5. “탈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맹신청서류)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고자 하는 경기단체 및 체육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신청서(장애인체육회 양식)
2. 단체연혁
3. 임원명단(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
4. 정관 또는 단체규약
5.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
6. 시군지부 설치현황
7. 선수 또는 팀 등록 현황
8.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9.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10. 가맹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11. 당해 단체의 국내 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
12.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을 승인한 가맹단체의 지부인정서

제4조 (가맹요건)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1.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2. 경상남도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3. 2개 이상의 시·군 지부가 있거나 도내에 1개 이상의 팀이 있을 때
 4.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공인종목이거나 국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하고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
 5.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 ② 상기 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체육단체의 경우 1항 3호 내지 5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절차)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제한사항)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예산의 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탈퇴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하게 한다.

1.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
2. 제4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3.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장애인체육회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임원 또는 집행부 부재 및 인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장애인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제8조 (탈퇴신청) 가맹단체가 제7조 각 호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신청서
2. 탈퇴사유서
3.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

제2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2. 27>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 2. 22>